

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9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0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공공요금 과오납, 부과행위 취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, 납부한 공공요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함에도 기존 조례상의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해 환불불가 등 주민 불이익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위법·소극 행정행위를 예방하고 주민권익을 보호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함

2. 주요내용

가.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조항(제21조)을 삭제하고자 함.

※ 제21조(이용료의 반환)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민법」

제741조(부당이득의 내용)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20. 9.21.~ 2020.10.11.(21일간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21조(이용료의 반환)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<삭 제></p>

[붙임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
연락처	(033) 330 - 2340